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	장부결정액 (C)	수납액 (D)	미수납액처리			상환 (E)	
						계	결손 처분	다음년도 이월		
총 계	155,354,28	29,051,28	184,405,56	212,119,12	185,948,77	26,170,35	3,702,42	22,467,93	87.7	
	2	4	6	4	3	1	0	1		
소 계	139,083,2	21,922,6	161,005,8	183,219,1	163,097,7	20,121,3	3,616,29	16,505,0	89	
	14	05	19	21	44	77	7	80		
일 반 회 계	지방세	23,592,0	23,592,0	28,870,9	24,234,3	4,636,56	2,397,23	2,239,32	83.9	
		00	00	55	90	5	7	8		
	보통세	19,327,0		19,327,0	20,977,3	19,884,7	1,092,65	21,812	1,070,84	94.8
		00	00	68	14	4		2		
	목적세	3,265,00		3,265,00	3,446,42	3,390,88	55,531		55,531	98.4
		0	0	0	9					
	과년도수입	1,000,00		1,000,00	4,447,16	958,787	3,488,38	2,375,42	1,112,95	21.6
		0	0	7		0	5	5		
	세의 수입	29,286,5	21,922,6	51,209,1	68,246,1	52,761,3	15,484,8	1,219,06	14,265,7	77.3
		34	05	39	67	55	12	0	52	
경상적 세의수입	11,009,3		11,009,3	12,308,4	12,235,6	72,802		72,802	99.4	
	80		80	30	28					
임시적 세의수입	18,277,1	21,922,6	40,199,7	55,937,7	40,525,7	15,412,01	1,219,06	14,192,9	72.4	
	54	05	59	37	27	0	0	50		
지방교부세	3,252,00		3,252,00	3,242,30	3,242,30				100	
	0		0	0	0					
조정교부금 및 채정보전금	29,692,9		29,692,9	29,668,6	29,668,6				100	
	03		03	85	85					
보조금	53,259,7		53,259,7	53,191,0	53,191,0				100	
	77		77	14	14					
국고보조금	32,845,6		32,845,6	32,785,3	32,785,3				100	
	74		74	60	60					
사도비 보조금	20,414,1		20,414,1	20,405,6	20,405,6				100	
	03		03	54	54					
지방채										
소 계	16,271,0	7,128,67	23,399,7	28,900,0	22,851,0	6,048,97	86,123	5,962,85	79.1	
	68	9	47	03	29	4		1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	120,649		120,649	297,345	120,176	177,169		177,169	40.4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462,108		1,462,108	1,482,680	1,408,455	74,225		74,225	95
	주차장	10,239,235		10,239,235	16,136,718	10,356,347	5,780,371	86,113	5,694,248	64.2
	주거환경 개선사업	1,180,820	300,149	1,480,969	1,586,474	1,569,265	17,209		17,209	98.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14,356	5,411,841	6,326,197	6,326,197	6,326,197				100
계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353,900	1416,689 (700,000)	3,770,589	3,070,589	3,070,589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예산정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D)	익년도 이월액 (E)	불용액 (C-D-E)
합계	155,354,282	29,051,284	184,405,566	158,900,242	156,154,511	19,560,739	8,690,316
소계	139,083,214	21,922,605	161,005,819	142,748,021	140,002,290	15,737,179	5,266,350
일반회계	일반행정	41,679,596	853,690	42,533,286	41,223,660	41,223,660	1,309,626
	사회개발	76,804,261	4,582,079	81,386,340	73,608,946	73,608,946	6,388,548
	경제개발	16,666,979	16,795,148	33,462,127	25,870,819	23,125,088	9,295,927
	민방위	207,637		207,637	130,944	130,944	52,706
	지원및타경비	3,724,741	△308,312	3,416,429	1,913,652	1,913,652	1,502,777
소계	16,271,068	7,128,679	23,399,747	16,152,221	16,152,221	3,823,560	3,423,966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20,649		120,649	94,032	94,032		26,6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62,108		1,462,108	22,300	22,300		1,439,808
	주차장	10,239,235		10,239,235	9,024,587	9,024,587		1,214,648
	주거환경개선사업	1,180,820	300,149	1,480,969	1,109,319	1,109,319	370,313	1,33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14,356	5,411,841	6,326,197	3,018,665	3,018,665	3,265,976	41,556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2,353,900	1,416,689	3,770,589	2,883,318	2,883,318	187,271	700,000

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시행령제46조, 제47조
- 지방자치법제41조, 제42조, 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40조
- 사하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3. 검토의견

가. 세입분야

- 2004년도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 사업비 등을 가산한 세입예산 현액이 1,844억 556만 6천원이며, 이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121억 1,912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7.7%인 1,859억 4,877만 3천원을 수납하여 전년대비 54% 증가 되었습니다.
-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1,630억 9,744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02%로서 전년도 90.07%보다 1.05%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242억 3,439만원을 수납하여 83.9%, 세외수입은 527억 6,135만 5천원을 수납하여 77.3%로 전년대비 72.5%보다 4.8% 상승하였으며, 지방교부세 32억 4,230만원, 조정교부금 296억 6,868만 5천원, 국시비 보조금 531억 9,101만 4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징수하였으나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효율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라 하겠으나 주 요인은 하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수입을 신중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인 지방세 부분이 46억 3,656만 5천원, 세외수입이 154억 8,481만 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전체 미수납액은 201억 2,137만 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1%에 달하여 전년도 168억 3,601만 3천원보다 32억 8,536만 4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165억 508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36억 1,629만 7천원이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및 시효

소멸로 결손 되었으나 결손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다 적극적인 장수방안과 예방적인 장수활동이 필요하겠으며

-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89억 3천원을 장수 결정하여 79.07%인 228억 5,102만 9천원을 장수하여 전년대비 2.6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의료보호가금 1억 7,716만 9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422만 5천원, 주차장 57억 8,037만 1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720만 9천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차지하고 있고, 장수율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64.2%로 전년대비 6.2% 상향되었으며, 결손처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8,612만 3천원으로 전년 771만원 대비 1,117% 증가 되었으며, 그 사유 또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것으로 소극적인 자세보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금은 8억 5,607만 4천원이 증가한 59억 6,285만 1천원이며, 기타 의료보호가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미수납 이월액은 소폭 상향되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은 감소되었으며, 저소득층의 회수 불분명한 체납금 등은 결손처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사업은 체납이 없습니다.

나. 세출분야

- 2004년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등 예산 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이 1,844억 556만 6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1,561억 5,451만 1천원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등 195억 6,073만 9천원을 공제한 86억 9,031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전년도 153억 5,984만 1천원보다 66억 6,952만 5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400억 22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가 집행된 것으로 2003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집행실적 79.2%보다 개선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등은 90%이상의 높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개발비와 민방위 등은 70%이하의 비교적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52억 6,635만원이며, 불용율은 3.3%로 전년도 불용액 95억 3,644만 4천원(6.3%)보다 42억 7,009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행정비 13억 9,62만 6천원, 사회개발비 13억 8,884만 8천원, 경제개발비 10억 4,111만 2천원, 민방위비 2,398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 277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각각 발생되었으나 전년도보다 42억 7,000만원 이상 감소한 것은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으로 효과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겠으나 예산 편성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며

- 당해연도 사업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29건 129억 9,144만 8천원으로서 울산도문화회관 소강당 건립비 30억 8,755만 4천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9억 7,500만원, 과정3동 신세화백화점~과정3 동시간 도로개설비 10억 8,210만 8천원을 포함한 도로개설비 13건 53억 263만 9천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도로유지관리비 3건 10억 8,755만 7천원, 다대동 삼미 매립지 동측 침식 방지사업 등 도시개발관리사업 3건 3억 5,610만원, 장림유수지 고차배수로 설치사업등 상하수도

관리사업비 2건 8억 2,866만 5천원,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 7,719만 3천원, 기타
과정보호수 씬지공원조성비, 자율관리어업지원사업비 등이며,

사고이월은 10건 27억 4,573만원이며, 장립2동 영남중학교 주변도로 개설비 14억 2,961만원
과정2동 대티로~과정 산193번지간 도로개설비 4억 9,752만 8천원등 도로개설비 9건 24억
4,460만원, 도로단속차물 아적창고 및 압류게임기 보관창고 건설에 3억 113만원 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9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 의료보호기금의 5개 특별회계의 총 불용액은 34억 2,39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9,943만
1천원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흥타마을 공영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명시아월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 7,081만 2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32억 6,597만
6천원, 흥타마을 공영개발 사업비 1억 8,72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억 5,257만 2천원
으로 전년대비 51% 감소되었습니다.

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 채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징수목표액 대비 96% 전년도 대비 84.6%초과 징수 등 채납액 정리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누적채납액은 165억 508만원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 되었으며
미수납액 차라에 있어 불납결손처분 총액이 36억 1,6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10억 4,409만원에
비하여 25억 7,220만 8천원 288.7% 증가 되었으며, 세입별 불납결손사유별 분석결과 납부자
무재산이 1,698건 22억 3,542만 7천원, 시효소멸 완성이 4,692건 13억 938만 4천원 등이 순위별로
발생 전년대비 무재산이 474.66% 증가된 18억 4,641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시효 소멸은
113.57% 증가한 6억 9,448만 9천원이 증가한 것은 회수 불가능한 채납처리 등에 신중을
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무재산의 경우 결손액의 95%가 부동산 보유세로서 사전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 졌었다면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치 않은 일반회계 불용액은 52억 6,63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2억 7,009만 5천원 감소하였고, 이중전액불용은
7건 1,926만 6천원, 1,000만원이상 불용이 52건으로 사회복지비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이월사업비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어 예산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 등은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2004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02%인 7건 4,366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40만 2천원 감소하였으며, 전액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전용
되었으며 복지사업소 신설에 따른 교육여비 등은 사전 예상치 못하였다 하겠으나 국내출장

여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산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을 결정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2004년도 직제 조정, 개편 등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 사항은 없습니다.

- 예산의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5억 6,073만 9천원으로 전년도의 290억 5,128만 4천원에 비하여 32.67%, 94억 9,05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의 상당부분이

도로건설 및 도로유지 관리부문으로서 국시비 내시지연 및 추경예산의 편성 등이 공사 기간의 절대부족 원인이 되겠으나 민원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과 각종 시행계획 및 승인 지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부족현상도 초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출예산의 이월은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사업을 지연 시킴으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이월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타 결산 검사 위원회의 지적 사항중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건립 채무 부담 행위의 승인 유효 존속 지적은 예산편성 과목 설정 착오에 기인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2차 추경 경정사항과 장림동 신150번지 일원 도로신설 타당성 용역비의 명시이월 지적사유,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증가액의 대위변제후 구상채권관리 건의 등은 해당 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사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지적된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징수 물품 관리 부실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채권 현재액 불일치 지적 등 기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라. 종합 의견

- 향후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각 부서별 결산검사서상에 나타난 바람직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은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정확한 세입 예산과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기타 사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